

자격시험 간담회

2014. 05. 26



1. 민간자격 등록 절차



“자격기본법” 개정에 따른 사전 등록

▶ 13년 4월 5일 **자격기본법 개정**, 10월 6일 시행

➡ 개정의 주요 목적은 민간자격의 미등록 운영, 거짓 · 과장 광고 등으로부터 소비자 보호와 국가의 관리 · 감독 강화

개정전 **사후등록** [자격증 발급→등록]에서,

자격신설 및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등록신청을 먼저 진행하고,
등록확정 이후 자격검정 등을 **실시**하는

사전등록 [등록→자격증 발급] 으로 변경

등록 신청한 민간자격에 대해 부처의 위임을 받은 전문기관
[직업능력개발원 등]이 **발급한 등록증**을 **수령**한 다음에 자격검정,
자격증 발급 등 **운영이 가능**

※ **미등록 상태**에서 자격검정 등 운영시 자격기본법에 따라 **형사처벌**

1. 민간자격 등록 절차



“자격기본법”

[법률]

제17조(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) ① 국가외의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·운영할 수 있다.

1.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
2. 국민의 생명·건강·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
3.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
4.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

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·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
[시행령]

제23조(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) ① 주무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(이하 이 조에서 "금지분야"라 한다)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교육부장관이 구축하는 자격정보시스템(이하 "민간자격정보시스템"이라 한다)에 공고하여야 한다.

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·운영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포함된 민간자격 등록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를 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[벌칙]

제39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**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**에 처한다.

1의3.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신설하여 관리·운영한 자

1. 민간자격 등록 절차

사후 등록

자격기본법 개정

사전 등록(2013.10.6 시행)



자격 신설 및 운영계획 마련

검정, 자격증 발급 등 운영
(미등록 상태)

검정실적을 바탕으로
민간자격 등록

① 등록 신청 ④ 등록증 발급



(업무위탁 : 직능원)

② 금지분야 여부 등
의견 조회 ③ 의견 회신



관계부처



자격 신설 및 운영계획 마련

운영계획을 바탕으로
민간자격 등록

① 등록
신청

③ 등록증
발급



(업무위탁 : 직능원 등 전문기관)

② 주무부처의
금지 및 등록 여부 판단

(등록 후)
검정, 자격증 발급 등 운영



미등록 자격운영 시
3년 이하의 징역 또는
3천만원 이하의 벌금

• 자격기본법 17조제2항 •

민간자격을 신설하여
관리·운영하려는 자는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
등록하여야 한다.

• 자격기본법 제39조1의3호 •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
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...

1의3. 제17조 제2항을 위반하여
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아니하고
이를 신설하여 관리·운영한 자

...

2. 민간자격 등록 신청 및 결과



협회 자격시험 등록

14년 5월 20일
민간자격 등록
불가 통보
[철회 요청]



14년 2월
주무부처(금융위)
로 이송



13년 10월 22일
민간자격 등록 신청



2. 민간자격 등록 신청 및 결과



등록 불가 사유

- ▶ 금년까지 금융위원회로 신청접수된 **민간자격 모두 등록 불가** 방침
 ➔ 신용회복위원회 “신용상담사” 등
- ▶ 금융위원회는 **대부업권**의 자격제도 **도입의 필요성**을 **부정적인 입장**
 ➔ 자체 교육제도 도입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

※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 등록(사전)은 **단순 등록제**로 동법 제17조 1항에
해당하지 아니하고 서류상 하자가 없으면 **등록**을 해야함

2. 민간자격 등록 신청 및 결과



주무부처 변경, 신규신청

▶ 기존 주무부처(금융위원회)건 **철회**, 안전행정부 **신규신청**

➡ 금융위원회(**철회**) → 안전행정부(**신규신청**)

○ 민간자격 신청 화면

○ 등록신청현황

홈 > 마이페이지 > 등록신청현황

구분 ▼ 자격명 ▼ 🔍 검색

[1/1 pages] 총 1건이 검색되었습니다.

번호	구분	자격명	신청일	현재상태	관리
1	신규	대부관리사	2014-05-21	등록신청	▶ 보기 - 삭제

1

※ 등록 유무 처리 기한 (**3개월**) 즉, **8월** 안에 등록 유무 확인 가능

2. 민간자격 등록 신청 및 결과



자격명칭 변경 사유

▶ 금융위원회 권고

명칭에 **소비자, 금융, 여신** 등의 내용 포함하지 말고, 반드시 자격시험 명칭에 **“대부”** 포함 권고

※ 주무부처를 안전행정부로 신청한 부분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진행된 부분이며, 안전행정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의견 요청시 협조하기로 함
단, **금융위원회**의 권고사항을 이행한 경우

→ 대부(중개)업 등록기관 (시·도지사) 의 주무부처인 **안전행정부로 신청**

따라서 우리 협회는 기존 **“소비자금융관리사”** 에서 **“대부관리사”** 로 부득이 **명칭을 변경하여 신청**

3. 시험 일정 변경



시험일정 계획

▶ 자격시험 일정 연기

↪ 기존 7월 시험에서 10월로 연기



기존 시험 예정 월



변경 시험 예정 월

※ 세부 일정은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의 결과에 따라 공지 예정